

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안내

◆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·중소기업을 위한 총 3조 1,500억원의 금융 지원 방안 마련 ('20.02.28 발표)

1 주요 지원내용

※ 해당 자료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내용만 다루었으며,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고

□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 6,000억원 확대

: (기존) 250억원 → (확대) 6,250억원

○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업종이 없도록 기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 대폭 확대

- 중소 병·의원, 교육서비스업, 프랜차이즈, 중소영화관,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받는 쏠업종*으로 대폭 확대

* 사행산업,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용자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등은 제외, 단, 중소 병의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공중보건목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대상에 포함

○ 인하된 대출금리를 유지(2.65 → 2.15%, △0.5%p)하면서 기업당 지원한도는 확대(10억원 → 15억원)

□ 기 대출기업(중진공 자금) 적극적 만기연장·상환유예 추진

○ (만기연장) 최소 상환요건(25%) 미적용 및 가산금리(0.5%)를 미부과 하고, 매출 관련 증빙자료 없이 신속한 만기연장 추진

○ (상환유예) 지원 대상*을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기업으로 전면 확대하고, 유예기간(6개월 → 9개월)을 연장

* (기존) 거래처 생산지연 피해, 중국 수출입기업, 관광·공연·운수업종 등 → (확대)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 자금경색 애로 기업

1]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- (신규) 자금공급 : 긴급경영안정자금 6,250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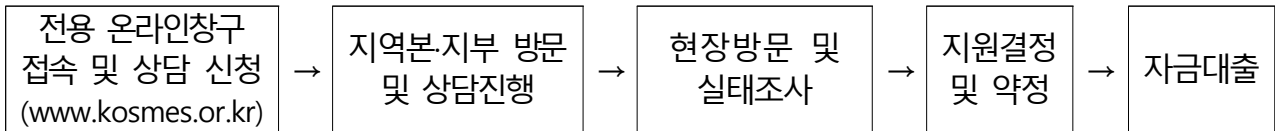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 요 내 용
지원대상	· 코로나19 피해(병·의원,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)로 매출액 10%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
용자조건	· (대출기간)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) · (대출한도) 기업당 3년간 15억원 이내(연 10억원) ·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('20.1분기 2.15%)

- (기존)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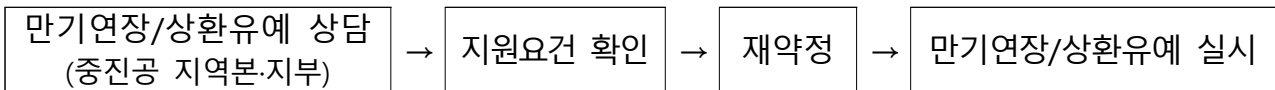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 요 내 용
만기연장	· 최소 상환요건(원금 25% 이상) 미적용 · 가산금리 미부과(0.5%p)
상환유예	· 지원대상 확대 (단기 자금경색 애로기업 포함) · 유예기간 연장(6개월 → 9개월)

- 신청 절차

- 신규 공급



-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



▶ 문의처 : 통합콜센터 1357

중진공 지역본·지부(홈페이지 www.kosmes.or.kr 참조)

② 기술보증기금

○ (신규) 자금공급 : 1,050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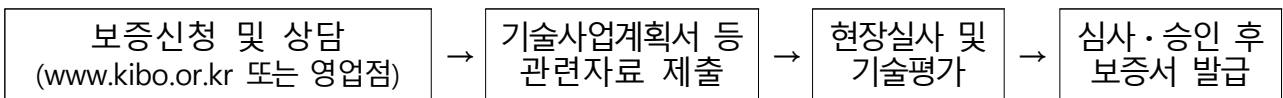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 요 내 용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아래 “대상기업 세부기준”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 ○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·입 실적이 있는 기업 ○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, 관광숙박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관광식당업, 시내순환관광업, 유원시설업, 국제회의업 ○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○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○ 「공연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운영업 등 ○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
보증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보증한도) 동일 기업당 3억원 이내 · (보증비율) 95% 부분보증 / (보증료율) 1.0% 고정보증료 · (심사기준 완화) 연체대출금 사실 요건 완화

○ (기존) 만기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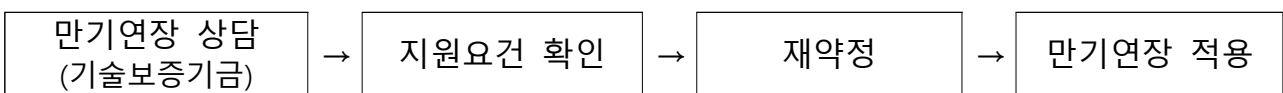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 요 내 용
지원대상	· 신규 공급과 동일
만기연장	·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(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)

○ 신청 절차

- 신규 공급



-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



▶ 문의처 : 통합콜센터 1544-1120

각 영업점(홈페이지 www.kibo.or.kr 참조)